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599호 |
|----------|--------|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2월 06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2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독립유공자 및 그 유·가족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- 북한이탈주민 중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.
- 관내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계약대상자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정한 우선계약 대상자를 “장애인 등” 으로 표현하여 표현 간소화 도모(안 제2조, 제5조, 제6조)
- 나. 종전의 지원대상에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·가족” 과 “다문화가족” 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(안 제2조)

다. 종전의 지원대상인 “북한이탈주민” 에서 “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” 로
지원대상을 구체화함(안 제2조)

※ 보호대상자: 장애인,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,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
질환자,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

라. 그 밖에 용어 등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논의된,
다문화가족에 대한 우선 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득 요건이 필요하다는
의견을 반영하여 「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」 기준표를 신설함.

7. 심사결과 : **수정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제출안 1부, **수정안 1부**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장애인·노인·한부모가족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”을 “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와 그 유·가족,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 등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4조 중 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”을 “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”을 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”으로, “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”를 “장애인 등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제1항 중 “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

민과” 를 “장애인 등에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애인 · 노인 · 한부모가족 ·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· 북한이탈주민 2명 이상이 신청한” 을 “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장애인 · 노인 · 한부모가족 ·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· 독립유공자와 그 유 · 가족,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</u>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2. “노인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3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4. 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”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5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 등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.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|

제4조(사전공고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신청자격 및 제출서류)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주민과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장애인등록증사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(우선허가)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4조(사전공고) -----

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-----
-----.

제5조(신청자격 및 제출서류) -----

-----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-----
----- 장애인 등으로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(우선허가) ① -----

여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
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과
허가 하여야 한다.

② 장애인·노인·한부모가족·국
가유공자와 그 유족·북한이탈주민
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
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
야 한다.

--- 장애인 등에게 -----

-----.

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
이 2명 이상인 -----

-----.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559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5. 4.
제출자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요건을 규정하고자 “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” 기준표 신설[별표 1]
-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[별표 1]의 규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선정의 구체화

2. 주요내용

- 안 제6조(우선허가) 제2항의 “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” 를 “별표1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” 로 수정하여 우선순위 구체화
- 우선계약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인 [별표 1] “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” 를 신설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”를 “별표1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(제6조 관련)

| 순위 | 장애인 | 65세이상 노인 | 한부모가족 |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|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| 북한이탈주민 | 다문화가족 |
|--|---|---|---|--|---|---|---|
| 1 |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|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| 「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동법 시행령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|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 제2조의 다문화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|
| 2 |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(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) |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(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)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(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)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(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) | 「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(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)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동법 시행령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(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) |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 제2조의 다문화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(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) |
| <p>※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.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3. 김포시 장기간 거주자 | | | | | | |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제 출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
| <p>제6조(우선허가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<u>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제6조(우선허가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별표1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.</u></p> |